

'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

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,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'24.6.17(월)~6.28(금)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7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1. 개요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근거: 법 제4조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: 법 제5조 제1항
 -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(핀테크 기업 등)와 금융회사 등 (법 제2조 제3호)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: 법 제17조 제1항
 -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기간: 법 제4조, 제10조
 - 2년의 범위 이내이며,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
2.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

□ 지정 절차: 법 제4조, 제5조

-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*의 심사와
관련 행정기관의 동의(필요시)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

*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
설치한 민·관합동 위원회

□ 심사 기준: 법 제13조 제4항

심사 기준

1.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
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
2.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
3.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
4.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
수 있거나,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
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
5.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
6.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
하고 건전한지 여부
7.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
 - 가.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,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, 고개별 거래 횟수
등에 대한 제한 방안
 - 나.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
 - 다.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
 - 라.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
 - 마.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
 - 바.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
위한 방안
 - 사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
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8.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
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
9.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

3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'24.6.17(월) ~ '24.6.28(금)

*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(신청서 원본은 7.1일(월)까지 발송)이며, **마감일 오후 6시**까지 신청 가능

※ 동 기간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

□ 신청분야 :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

○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**금융관련법령***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

* 법 [별표]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하여 법령·규정(법 제2조 제1호)

□ 신청방법

○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**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***
(→ 본 공고문 “4. 제출 서류” 참고)

*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(sandbox.fintech.or.kr) - 「제도 신청」 - 「신청 방법」 - 「혁신금융서비스」 - 하단 「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」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(날인본)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(필수)

□ 유의사항

○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, 심사기준,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

4. 제출 서류

① **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(sandbox.fintech.or.kr)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***

*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(sandbox.fintech.or.kr) - 「제도 신청」 - 「혁신금융서비스」에서 다운로드 가능

연번	제출 서류	형태
1	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(非날인본)	전자적 형태(HWP)
2	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(날인본)	전자적 형태(PDF)
3	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	전자적 형태(HWP)
4	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	전자적 형태(HWP 또는 PDF)
5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전자적 형태(PDF)
6	신청 내용 요약본	전자적 형태(EXCEL)
7	첨부파일 체크리스트	전자적 형태(EXCEL)

②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

연번	제출 서류	형태
1	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(날인본) 원본	문서 실물

- 주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
금융혁신기획단 금융규제샌드박스팀 (02-2100-2907)

※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(☎02)2100-2907, 02)2100-2859),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(☎02)3145-7167), 한국핀테크지원센터(☎02)6375-1523(신청 관련), 02)6375-1525(컨설팅 관련), 02)6375-1521(제도운영관련))로 문의하시거나,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(<http://sandbox.fintech.or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